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03
------------	-------

발의연월일 : 2017. 12. 18.

발 의 자 : 주광덕 · 김정재 · 강석진
윤종필 · 김세연 · 김성찬
정종섭 · 추경호 · 성일종
윤재옥 · 권성동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담금이 투명하게 부과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그 밖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

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 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제13조의4, 제38조).

주요내용

- 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의 책임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별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됨을 명시함(안 제3조의2).
- 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함(안 제13조의4제5항).
- 다. 산업단지 존치시설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3조 제3항 및 제5항).
- 라.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을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후부터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과 별칙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는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제9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감면한다”를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담기준 및 징수방법”을 “징수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8조제9항 본문 중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한다”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⑤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개발 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33조(시설 부담)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설부담금} = \frac{\text{공공시설 건설비용}}{\text{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 (존치시설물의 면적 포함)}} \times \frac{\text{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text{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감면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부담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 ⑧ (생략)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

제33조(시설 부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제2
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⑤ -----
----- 징수방법-----

-----.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p>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u>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p> <p>1. ~ 4. (생략) ⑩ ~ ⑪ (생략)</p>	<p>----- ----- ----- ----- ----- ----- <u>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u> ----- -----.</p> <p>1. ~ 4.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과 같음)</p>
---	--